

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연장공고

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'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'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.

2026년 4월 3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※ 본 공고는 「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」(공고 제2026-154호, 2026.3.14.)를 다음과 같이 **수정한 공고**입니다.

< 변경사항 >

구분	기존	변경	관련
접수기간	'26.3.11.(수) ~ 4.3.(금), 16:00	'26.3.11.(수) ~ 4.17.(금) , 16:00	3p
고용확인 서류	4대보험 가입자 명부 (필수 제출)	4대보험 가입자 명부 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)	4p

2026년 공고 주요내용

□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개요

지원대상	지원내용	지원조건	지원규모
소상공인협동조합, 자율상권조합	협동조합이 공동생산·판매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장비, 기술개발, 마케팅 등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비 : 70~80% 이하 ■ 자부담 : 20~30% 이상 	40개사 내외

□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

신청방법	온라인 신청(coop.sbiz.or.kr , 협업활성화 시스템)
접수기간	'26. 3. 11.(수) ~ 4. 17.(금), 16:00까지

□ 문의처

문의처	전화번호	e-mail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	042-363-7922, 7926, 7928	coop@semas.or.kr
협업 아카데미 (공동사업 지원기관)	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	ybpark@kcdc.co.kr
	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	c-cmail@daum.net
	광주, 전북, 전남, 제주	gjsbiz@naver.com
	부산, 대구, 울산, 경북, 경남	dg_ac@daum.net

□ 유의사항

- 협동조합 자부담금,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반드시 **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(e나라도움)**을 통해 집행하며, 「국가계약법」에 근거하여 계약 및 집행
- '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(3.24 공고)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

1

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** :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협동조합(조합원)의 경쟁력 제고
- **지원 대상** :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, 자율상권조합 등(컨소시엄 포함)
- **지원 내용** : 공동생산·판매,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(공동장비·공동일반) 지원

지원분야	세부내용	
공동장비	•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(생산, 검사,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) 지원	
공동일반	개발	• 신제품·기술, 공정개선, ERP 구축, 비즈니스 모델(BM) 등 각종 기법개발
	브랜드	• 브랜드(CI, BI, 네이밍, 캐릭터), 디자인(상품, 포장)
	마케팅	• 홍보물(리플렛, 카탈로그 등), 광고(온·오프라인) 등
	네트워크	• 홈페이지,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*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
	규모화사업	•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(예비)조합원 대상 교육사업(설명회)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
	프랜차이즈 시스템	• 정보공개서, 가맹계약서, 프랜차이즈 매뉴얼,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
	상권활성화	•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활성화 활동

- **지원유형** :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

구분	지원한도(분야별 정부보조 비율)	선정규모
성장단계	0.5억원(공동장비 70%, 공동일반 80% 이내)	24개사 내외
도약단계	1억원(공동장비 70%, 공동일반 80% 이내)	12개사 내외
혁신성장단계	3억원(공동장비 70%, 공동일반 80% 이내)	4개사 내외

*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국비 총액 기준

** 지원금 이외의 비용(자부담, 부가가치세, IOT 단말기 설치 등)은 협동조합(연합회) 부담

- **선정 우대**

- ① (사회문제해결)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
- ② (컨소시엄)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·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
- ③ (지역기반)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%가 동일 지역(시·군·구)에 소재한 협동조합

2

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'26. 3. 11.(수) ~ 4. 17.(금), 16:00까지

* 2026.4.17.(금)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<http://coop.sbiz.or.kr>, 협업활성화 시스템)

지원분야	세부내용
① 회원가입	• 조합 이사장(연합회 회장)이 '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' 홈페이지 회원가입
② 신청서 작성	• '협업활성화(http://coop.sbiz.or.kr)'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(연합회 회장)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, 증빙서류 등록 -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, 사업신청(조합 정보, 사업비 신청내역 등)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(제출서류별 발급처는 별도 파일 [참고3] 참조)

※ 신청기간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선정 전·후 지원대상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 이후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
□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

제출서류	검토사항	제출범위	
		조합	연합회
작성서류	(1)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(* 신청화면 內 "자가진단" 체크)	조합	연합회
	(2) [서식 1] 사업계획서 (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서식 1-2 작성)	조합	연합회
	(3) [서식 2] 신청서류 체크리스트	조합	연합회
	(4)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(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) * 단, 선정 이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 제출 必	이사장 등	연합회장 등
	(5) [서식 4] 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이사장	연합회장
	(6) [서식 5] 사업 참여 협약서	등기임원	등기임원
	(7) [서식 6] 조합원명부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- 발기인, 성명, 업체명, 사업자번호를 포함하여,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-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'법인'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登記되어 있어야 함 - 조합원별 소상공인 여부, 사업장 소재지 기재	조합	연합회, 회원조합

제출서류	검토사항	제출범위	
		조합	연합회
출자자 명부	<p>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- 성명, 생년월일, 출자좌수, 출자금액을 포함하여,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-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'법인'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	조합	연합회, 회원조합
협동조합 정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 	조합	연합회, 회원조합
고용확인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(1) 또는 (2) 제출 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 서류 (1) (상시근로자 있을 시)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(내역)(25년 1~12월) (2) (상시근로자 없을 시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	조합	연합회
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말소된 등기사항 포함'하여 '제출용'으로 발급 - 등기임원이 '법인'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-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	조합	연합회
사업자 등록증명 NICE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(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) * 단, 선정 이후 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必 	조합 등	연합회 등
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* '체납 없음'이 증명되어야 함 -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	조합, 이사장	연합회, 회장
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	<p>아래 서류 모두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(필수) 20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(2) (필수) 2025년 매출확인서류 * (일반과세자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* (면세사업자)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	조합	연합회
가점 증빙 (해당 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여성) 조합원* 여성기업확인서 - (장애인) 이사장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, 조합원* 장애인기업확인서 * 연합회의 경우 회원조합 - (BM경진대회, 백년소상공인, 제조기반, 기업가형 소상공인) 사업계획서 양식 내 해당사항 기입 	조합 해당자	연합회 해당자

3

지원사업 안내

가.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-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공동사업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(조합원) 경쟁력 제고

□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'26. 11. 30.

□ 선정규모 : 40개사 내외(성장 24개사, 도약 12개사, 혁신성장 4개사)

* 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,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<선정 우대>

① (사회문제해결)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

* 사업계획서 내 사회문제 해결 방안 관련 내용 기재 필요

② (컨소시엄)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·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

* 사회연대경제 조직 :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, (예비)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기업

③ (지역기반)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%가 동일 지역(시·군·구)에 소재한 협동조합

나. 지원대상 및 요건

□ 지원대상 *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이 완료된 조합 및 연합회에 한함

- 협동조합기본법,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, 조합원 50% 이상이 소상공인*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(컨소시엄 포함)

- 또는,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

1) 협동조합기본법 :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
2) 중소기업협동조합법 :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,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(연합회)

3)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: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율상권조합

* 소상공인 여부 확인방법은 "[참고6]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" 참고

□ 신청요건

구분	단계별 요건(1개 해당)	정부지원 한도
성장단계 (①, ②번 中 택1)	① '25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~5억원 미만 ② '24년 대비 '25년 매출액 증가율 5% 이상~20% 미만 * '25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나, '25년~'26년 설립 조합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성장단계 신청 가능	5천만원
도약단계 (①, ②번 中 택1)	① '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② '24년 대비 '25년 매출액 증가율 20% 이상 * 단, ②의 경우 '24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	1억원
혁신성장단계 (①, ②번 中 택1)	① '25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 조합원 출자금 규모 1억원 이상(등기부등본 기준) * 단, ②의 경우 '25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	2억원 ~ 3억원

* 성장·도약·혁신성장 요건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, 신청금액에 따라 원하는 단계 선택

□ 우대사항 : 가점 최대 10점

구분	우대사항 세부내용
①청년(2점)	이사장이 청년일 경우 * 청년: 신청일('26.2.19)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('86.2.20 이후 출생자)
②여성(2점)	이사장이 여성이거나 또는 조합원 중 여성기업(확인서)이 있는 경우
③장애인(2점)	이사장이 장애인(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)이거나 조합원 중 장애인기업(확인서)이 있는 경우
④BM경진대회(2점)	'23~'25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BM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경우
⑤백년소상공인(5점)	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'백년소상공인'으로 지정된 경우
⑥제조기반(5점)	조합 소재지가 소공인집적지(구) 내에 위치한 제조업 영위 협동조합
⑦기업가형 소상공인(5점)	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아래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-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, 로컬크리에이터 육성, 로컬브랜드 창출

* ①~③ 해당 시 : (조합)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해당여부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

* ④~⑦ 해당 시 : (조합)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해당여부 기재 → (공단) 유관부서
통해 대한 가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확인된 이력에 한해 가점 부여

다. 지원분야 및 내용

□ 지원분야 : 성장단계, 도약단계, 혁신성장단계

구분	정부지원 한도	정부보조 비율	선정규모(안)
성장단계	최대 5천만원	공동장비 70%, 공동일반 80% 이내	24개
도약단계	최대 1억원		12개
혁신성장단계	최소 2억원 ~ 최대 3억원 (공동일반 최대 1.5억원 이내)		4개

* 혁신성장단계는 총 사업비 중 '정부지원금'을 2~3억원으로 신청 필요(신청한 정부지원금은 삭감될 수 있음)

※ 신청예시

- 성장단계로 공동장비 3천만원, 공동일반 2천만원 신청 시

구분	정부지원금	자부담금	총사업비
공동장비	30,000,000원	12,857,200원	42,857,200원
공동일반	20,000,000원	5,000,000원	25,000,000원
계	50,000,000원	17,857,200원	67,857,200원

* 선정심의를 통해 정부지원금 감액 가능

□ 지원내용

○ 공동일반 : 공동사업에 필요한 7개 분야별 지원(여러 분야 신청 가능)

< 공동일반 지원내용 >

[붙임1, 참고자료] - "참고1" 지원분야(가이드라인) 참조

지원분야	세부내용	
공 동 일 반	개발	• 신제품·기술, 공정개선, ERP 구축, 비즈니스 모델(BM) 등 각종 기법개발
	브랜드	• 브랜드(CI, BI, 네이밍, 캐릭터), 디자인(상품, 포장)
	마케팅	• 홍보물(리플렛, 카탈로그 등), 광고(온·오프라인) 등
	네트워크	• 홈페이지,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*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
	규모화사업	•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(예비)조합원 대상 교육 사업(설명회)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
	프랜차이즈 시스템*	• 정보공개서, 가맹계약서, 프랜차이즈 매뉴얼,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
	상권활성화	•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 활성화 활동

*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 : 프랜차이즈 시스템(체계) 구축을 필수로 하고, 구축 후 협약기간 (2년)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

○ **공동장비** : 공동사업에 필요한 장비(품목당 3백만원 이상) 구입비 지원

< 공동장비 지원내용 >

지원분야	세부내용
공동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① 품목별 구매단가 3백만원 이상, ② 협약기간(5년)간 사용·관리가 가능하고, ③ 생산, 검사,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* 신청 장비가 ①~③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- ※ 협동조합의 **공동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**하므로, 일부 조합원만 사용하거나 공동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장비의 경우(조합 사무실 냉장고 등) 지원 불가
- ※ 공동장비의 경우 **협동조합(연합회) 명의**(자가, 임대차, 전전세, 전대차 등)이고, 정부지원에 **적합한 장소에 설치** 필수(가건물, 불법건축물, 미등기 건물 불가)
 - * 현장검증 시 설치 장소를 증빙하는 서류(임대차 계약서, 건축물 대장, 부동산등기부등본 등)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, 현장검증 '부적합' 시 발표평가·선정심의에서 제외
- ※ 공동장비는 **협약기간(최대 5년) 동안 사용**하여야 하며, 조합의 과실로 인한 사유로 사용을 중지할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가능
 - * 모든 장비에는 IoT 단말기를 부착하여 가동 여부를 확인하며, 단말기 비용은 조합 부담
- ※ 공동장비 구매의 경우,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(<https://shop.g2b.go.kr>)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견적서 징구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절차 생략 가능
- ※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, 협약기간(5년) 동안 장비를 유지·관리할 의무는 '사업 신청 협동조합'에 있음

< 신청 불가 장비 >

구분	신청 불가 장비
개인 자산화 우려 장비	• 노트북, 태블릿, 스마트폰 등 휴대가 가능한 장비
감가상각·관리 곤란 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량, 오토바이, 자전거 등 이동형 장비 • 구매비용 3백만원 미만의 장비
소모성·단순 장비	• 프린터 토너, 소모품, 단순 공구, 부품 등
사무용 공통 장비	• 사무용 PC, 복사기, 냉·난방기 등 편의시설
가격 검증 불가 장비	• 중고 기계·장비, 리퍼비시 제품 등
부수적 비용 포함 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비, 장비 운반비용,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포함된 장비 (공사·설치비용에 대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)
조합·조합원 생산 장비	• 조합 또는 조합원이 직접 제작·생산·판매하는 장비

※ 상기 목록은 예시이며, 사업 목적 및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산관리·공동활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**심사 과정에서 제한**될 수 있음

라.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절차 : 총 2~4단계의 점검 및 평가·심의를 통하여 선정

① 서류 검토	→	② 현장검증 (공동장비 신청 시)	→	③ 발표평가	→	④ 선정심의
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		외부전문가 적합여부 평가		발표 및 질의응답		선정 여부 및 최종 사업비 결정
'26.4월 말		'26.4월 말		'26.5월 중		'26.5월 중

* 세부일정 및 평가 단계는 신청 수요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① (서류검토) 사업계획,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등 검토

-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, 보완요청 및 승인·반려처리

<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>

구분	처리조건	후속조치
접수	-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	- 현장검증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
보완	-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* 보완에 응하지 않고, 기 제출한 서류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 반려(평가제외) 될 수 있음	- 보완사항 안내 *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, 미 보완 시 반려(평가 제외) **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(3일 이내)을 연장할 수 있음
반려	-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	- 반려(탈락)사항 안내

② (현장검증) 공동장비 신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(적합여부) 평가

* 공동장비 설치 장소, 공동장비 필요성 등 평가 후 '적합'인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진행

③ (선정심의)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하고

협동조합의 대면(발표) 및 질의 응답 진행

- (심의내용) 사업모델, 조합역량, 사업지속성, 협동조합의 가치확립
등 평가, 조합 선정 및 예비후보 여부, 지원 금액 등 최종 심의

□ 최종 대상자 선정

-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자 및 예비자를 결정하며,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정 취소·포기자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 중 추가 선정
- 단, 예비자 유효기간은 최초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

※ 선정통보 이후, 기한 내 ①조합원 전원 회원가입, ②사업체 보유 조합원의 사업자 등록증명, ③조합원 50% 이상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**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**(③은 자율상권조합의 경우 예외)

□ 결과통보 :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확인 및 조합으로 개별 통보

마. 협약체결

□ 협약 전 추가서류 제출

구분	제출서류	비고
선정 후 3일 이내	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 회원가입	조합원 전원
	사업자등록증명	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
	소상공인 확인서류* *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을 통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력(유효기간 내)이 있는 조합원은 제출 예외	조합원 50% 이상
협약 체결 시	협동조합 법인인감증명서	3개월 이내 발급분
	조합 명의의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입금내역	공동일반/공동장비를 구분하여 별도 통장 개설
	이사장을 포함한 조합원 2인의 온라인 교육 수료증 * 교육 수료 페이지 등은 별도 안내 예정	-

※ 기한 내 ①조합원 전원 회원가입, ②사업체 보유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명, ③조합원 50% 이상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**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**될 수 있음(③은 자율상권조합의 경우 예외)

※ 조합원(연합회원) 대상 소상공인 확인서류 인정범위

(제출권장) 소상공인 확인서('협약체결일' 기준 유효기간 이내)

(인정가능) '23년~'25년 매출액 확인서류 + '25년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

<참고6>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에 기재된 서류목록 참고

□ 협약 후 사업추진

단계	세부내용
① 사업비 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비 선정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교부 신청 사업비는 2차례 분할 교부
② 조합별 사업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가액 2천만원 이하 계약 시 → 공급업체 3곳에 대한 비교견적 후 최저가 업체 선정 공급가액 2천만원 초과 계약 시 →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비교 견적 및 입찰 필수
③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결과보고서 기반 사업비 집행내역, 사업 결과 등 점검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반납, 정보공시, 중요재산 공시 등

※ 협동조합 자부담금,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반드시 **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**을 통해 집행하며, 「국가계약법」에 근거하여 추진

※ 공동장비 구매의 경우,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(<https://shop.g2b.go.kr>)을 통해 구매 하는 경우 별도의 견적서 징구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절차 생략 가능

바.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

신청 제외대상

- ① '20년부터 '25년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조합(연합회)
-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(수행배제 등)에 해당할 경우
- ③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- ④ 협동조합(연합회) 및 조합 이사장(연합회장)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- ⑤ 휴·폐업중인 협동조합(연합회) 또는 조합원(회원)의 50% 이상이 휴·폐업중인 협동조합(연합회)
- ⑥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*(붙임1-"참고5")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(연합회) 및 조합원(회원)
 - * 주된 사업(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) 기준
 - ** 자율상권조합의 경우, 조합 및 조합원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- ⑦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
-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공통 유의사항

- ① 사업계획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**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(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) 될 수 있음**
- ②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,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③ **사업 참여 시 협동조합 조합원 또는 (컨소시엄)협업기업과의 내부거래(재화, 서비스 등 구입) 또는 "(참고8) 특수관계인의 범위"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(특수이해관계자)와 거래 불가**
-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,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 책임이 있음
- ⑤ 선정 이후라도 지원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- ⑥ '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
의무사항

- ① 사업비 집행 시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」을 필수 이용해야하며, 반드시 「국가계약법」, 「계약예규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- ② 선정 조합은 협약 체결 후 SGI서울보증의 '이행(지급)보증보험' 상품에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
 - *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은 유효하지 않으며, 증권 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(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)
- ③ **총 사업비*의 "자부담금"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"VAT(10%)", "IOT 장비 설치비(지원 장비 1대 당 20만원 내외)", "조달수수료" 등 기타 발생금액은 협동조합 부담**
- ④ 본 사업을 통해 협약한 조합은 공단의 요청자료* 및 재무현황 등을 공단에 제공해야 하며, 미이행 시 협약 의무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* ¹⁾공단에서 요청하는 조합현황 정보, ²⁾재무정보 등 현황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(연1회)
- ⑤ '26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차년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함